



ISSN: 2733-7146 © 2020 KODISA

JRPE website: <https://acom.s.kisti.re.kr/journal/intro.do?page=logo&journalSeq=J000176>doi: <http://dx.doi.org/10.15722/jrpe.1.1.202003.23>

Court's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and JRPE Goals*

Hee-Joong HWANG¹

Received: January 15, 2020. Revised: January 29, 2020. Accepted: March 05, 2020.

Abstract

Purpose: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we intend to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by the KODISA, which applies the court's standards well in practice,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fter classifying the case of research misconduct into six cases, the court's judg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reviewed. **Results:** First, research misconduct that has passed the disciplinary prescription can be punished. This is because the state of illegality continues to this day. Second, even if there were no punishment regulations at the time of research misconduct, it can be retroactively punished with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This is because research ethics is a universal and common standard and does not change. Third, if there is a fact that infring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resumed unwritten intentions. Therefore, the act of taking and using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or proper citation procedure, even if it is unintentional and for the public interest, is a research misconduct. Fourth, if there is an inappropriate citation notation, the int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is presumed. It is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even if a quotation is marked, if it is incomplete, it is recognized as plagiarism. Fifth, if the author uses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roper source indication, it is plagiarism even if the other person who owns the copyright agrees to it. The understanding or consent of some parties does not justify research misconduct in violation of public trust. Sixth, it is a research misconduct to create a new work without citations for one's previous work.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a citation, if the subsequent writing is not original, it is a research misconduct. **Conclusions:** Academia should clarify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KODISA, and deal with research results that lack the value as creative works similar to those of research misconduct.

Keywords : Research Misconduct, Court's Standards, Research Ethics, Plagiarism.

JEL Classification Code : I29, O30, O39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의 법적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연구부정행위의 성립시점과 판단시점, 징계시점이 모두 다를 경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 각 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의 시각을 참조하여 학계에서 마땅한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논란이 없는 반면에 그 시간적 적용 범위, 즉 시효에 있어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0.

¹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orea. Email: ygodson@knou.ac.kr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시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이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원의 기준을 실무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한국유통과학회의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과 학계의 판단기준의 격차가 해소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징계시효가 지난 연구부정행위

2.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법, 2011년 2월 10일 선고된 판결문(2010가합 57966)에 따르면, 2011년 2월 10일 논문 표절로 면직 처분을 받은 한 연구원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원고는 해당 논문을 발표한 시점이 2002년이며 징계 시점인 2010년엔 이미 징계시효 2년을 넘겨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면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이 사건 징계절차 개시 전까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 법원 판단과 적용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피해 발생 시점'이라는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판례이다.

연구부정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표절의 예를 들어 보자. 표절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가 고착화된다. 표절로 인한 원저작자의 피해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표절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시효로 보호해줄 이유가 거의 없다.

표절을 저지른 연구부정행위자는 표절 논문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연구부정행위자의 현재 위치는 과거의 연구부정행위에 기반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불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대학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에 적용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0년전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은 10년전 당시 규정 기준으로 현재시점에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그 연구부정행위와 연관된 논문의 심사를 통해 직급승진, 연구비 수령이 있었을 것이므로 대학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수에게 직급승진의 취소, 연구비 환수조치,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처벌 기준은 10년 전 당시 규정이 된다.

3. 연구부정행위 처벌규정의 소급여부

3.1.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년 10월 27일에 선고된 판결문(2015다 5170)에 따르면, 판결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3.2. 법원 판단과 적용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원칙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연구윤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행위시점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소속기관에 없었고 사후에 규정이 만들어져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이 이를 근거로 처벌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법원은 소속기관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윤리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므로 변한다고 볼 수 없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나 규정이 만들어지고 판단하는 시점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므로 불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연구부정행위 이후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 과거 부정행위 판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대학의 연구부정행위에 적용하여 보면 10 년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던 대학에서 현재 시점에 새로운 징계규정을 만들고 10 년 전 연구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때 처벌기준은 현재 시점의 새로운 징계규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연구부정행위자의 현재가 과거의 행위에 기초하여 얻어진 성과물이라면, 소속기관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소급하여 해당연구자를 처벌할 수 있다.

4. 저작권침해와 미필적고의

4.1. 사건개요

울산지법, 2006 년 6 월 16 일 선고된 판결문(2006 노 330), 대법원, 2008 년 10 월 9 일 선고된 판결문(2006 도 4334), 대법원, 2005 년 12 월 23 일 선고된 판결문(2005 도 6403)에 따르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 810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 조의 5 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4.2. 법원 판단과 적용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 26 조 제 1 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 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학술지 연구부정행위규정을 몰랐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창작물을 허가나 정당한 인용절차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보면, 출판사가 교재 마지막 장에 “본 출판사는 교재에 사용된 이미지가 혹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은 저자가 부담한다” 문구를 삽입한 경우에도 출판사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사로서는 저자의 저작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저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자와 연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출판물의 수입은 저자와 출판사가 분배하여 가지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저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출판사의 선언은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침해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출판사의 미필적 고의를 더욱 분명하게 해 줄 뿐이다.

5. 부적합한 인용표기시 고의 추정

5.1. 사건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다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2. 법원 판단과 적용

표절 사실이 있으면 행위자의 고의가 추정하여 인정되고 인용표시를 하더라도 불완전하면 표절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논문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문장 또는 문단 또는 페이지마다 각주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능한한 짧은 간격으로 자주 인용 표시를 하여 독자가 보았을 때 인용한 부분과 저자의 의견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읽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논문 저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본문에는 각주 표시를 하지 않고 대신에 서문 또는 참고문헌에 타인의 저작물을 명시하였다든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독자가 본문을 타인의 저작물 인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저자의 창작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문의 문장마다 각주를 달지 않았더라도 문단 전체, 페이지 전체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물임을 명시하였다면, 표절이 아니라 올바른 인용표기를 하지 못한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즉 타인 저작물의 인용만으로 한 문단이나 페이지를 모두 채운다면 그것이 논문으로서 독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의 고의성은 상당부분 희석된다고 볼 수 있다.

6. 연구부정행위의 피해자의 승낙효과

6.1. 사건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6.2. 법원 판단과 적용

연구부정행위의 법익 피해자는 논문 원저자, 출판사, 학회, 소속기관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의 양해나 승낙은 공공의 신뢰를 위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A 출판사의 양해와 승낙을 받고 B 출판사에서 본인의 A 출판사 저작물을 제목만 바꾸어 다시 출판한 후 소속기관에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신고하면 연구부정행위이다. 여기에서 A 출판사와 B 출판사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있었더라도 소속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부정행위이다. 심지어 소속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승낙 또는 양해하였더라도 두 출판사의 저작물은 다를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를 위반하였으므로 연구부정행위이다.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여 보면, 공동연구자 사이에서 실질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제 1 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출판물에 기재하는 기여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이다. 또한 각종 부적절한 저자권의 표기도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므로

연구부정행위이다. 다만 일종의 피해자가 승낙한 연구부정행위는 발견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7. 자기표절(중복게재)

7.1. 사건개요

대법원, 2016 년 10 월 27 일 선고된 판결문(2015 다 5170)에 따르면,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저자가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 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7.2. 법원 판단과 적용

저자의 선행 저술 인용 표시의 엄격성은 일반 타인 저작물의 인용 표시에 비해 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관점이다. 즉 자신의 저작물의 인용 표시의 엄격성은 완화되어 표시 형식보다는 저자의 진정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본다. 즉 법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에서 저자가 자기표절의 고의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반면에 저자의 선행 저술 인용이 있더라도 후행 저술이 독창성이 없다면 인용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자기 표절이 된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논문 저자가 본인 A 논문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하면서 B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사실상 B 논문은 A 논문에 비해 연구성과가 다르지 않았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심지어 논문유사도 프로그램 검사결과 A 와 B 논문유사도가 0 이었고 단어의 연속성 측면에서 두 논문의 형식적

유사성은 전혀 없더라도 내용과 맥락이 같은 연구결과를 지향하고 있다면 새로운 논문 B는 연구부정행위 저작물에 해당한다.

8. 결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법원과 학계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시효와 징계규정의 소급효 등에서는 법원이 좀 더 엄격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부정행위 판단이 성립요건에 치중한 나머지 처벌요건에서는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학계가 논문유사도 등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나머지 기여도가 부족한 연구성과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학계가 한국유통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부정행위 해당 논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유통과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 해당 논문은 다음 9가지이다(Hwang, Kim, Yoon, Lee, & Lee, 2014; Hwang, Lee, Lee, Kim, Yang, Youn, & Kim, 2015; Hwang & Youn, 2016; Hwang, Lee, Kim, Shin, Kim, Kim, Lee, Kim, & Youn, 2017; Hwang & Chae, 2017).

1. KCI 와 잼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확장 유사도 검사(카피킬러) 5 어절 이상, 1 문장 이상 일치 기준(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5%를 상회하는 논문. 다만 발표논문을 정규논문집에 투고한 경우나 본인의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경우는 카피킬러 기준으로 표절률이 10%를 상회하는 논문

2. 학회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번역 및 맞춤법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3.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자로서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 제 3 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논문. 다만 투고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이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제 3 저자의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4. 투고자 본인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별도 표기 없이 투고한 논문.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했다는 내용의 주석이나 본문 각주가 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가족(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이 공저한 논문. 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연구보고서, 타인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7. 복수 학술지에 동일 또는 유사 주제의 논문을 투고한 논문. 다만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을 철회할 경우는 예외로 함

8. 제목, 연구모형, 가설, 개념변수, 표와 그림, 연구결과 등 논문 구성요소가 선행 연구들과 매우 유사한 논문. 다만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부분을 인용을 통해 모두 명시하고 투고 논문의 차별성과 연구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연구윤리규정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한국유통과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서 게재불이익 대상 논문을 규정한 것을 참조하여 차후에는 창작물로서의 가치가 모자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준 연구부정행위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유통과학회의 논문투고규정으로서 게재논문 선별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게재불이익 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정교한 연구방법론이라 하더라도 기존 논문을 답습한 공헌(Contribution)도가 낮은 표절 의심 논문

2. 원어인 교정이 안 되어 문장이 조잡하여 해석이 난해한 영어 논문

3. 최근 논문 인용이 소량이고, 10년 전 논문을 인용한 논문.

4. 해외문헌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헌만을 인용한 논문

5. 학술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학위논문이나, 인터넷, 일반잡지, 뉴스를 인용한 논문

6. 목적, 연구방법론, 결과, 결론 등이 불명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논문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논문은 명확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논문에 비해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편집자나 출판담당자는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유통과학회(KODISA)가 창간한 연구윤리(JRPE)가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 학계의 연구와 출판윤리의 기준과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문 전 분야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References

- Hwang, H. J., Kim, D. H., Youn, M. K., Lee, J. W., & Lee, J. W. (2014). The Standard of Judgment on Plagiarism in Research Ethics and the Guideline of Global Journals for KODISA.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2(6), 15-20. <http://dx.doi.org/10.15722/jds.12.6.201406.15>
- Hwang, H. J., Lee, J. H., Lee, J. W., Kim, Y. E., Yang, H. C., Youn, M. K., & Kim, D. H. (2015). Strengthening Publication Ethics for KODISA Journals: Learning from the Cases of Plagiarism.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3(4), 5-8. <http://dx.doi.org/10.15722/jds.13.4.201504.5>
- Hwang, H. J., & Youn, M. K. (2016). Based on Proven Practices in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for the KODISA Journals. *The*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7(1), 5-10. <https://doi.org/10.13106/ijidb.2016.vol7.no1.5>
- Hwang, H. J., Lee, J. W., Kim, D. H., Shin, D. J., Kim, B. G., Kim, T. J., Lee, Y. K., Kim, W. K., & Youn, M. K. (2017). Cases of Ethical Violation in Research Publications: Through Editorial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5(5), 49-52. <http://dx.doi.org/10.15722/jds.15.5.201705.49>
- Hwang, H. J., & Chae, S. J. (2017). Research Ethics of Plagiarism of Adult Learners.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5(3), 41-47. <http://dx.doi.org/10.20498/eajbe.2017.5.3.41>